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 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http://www.nec.go.kr)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안내하고자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규정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예시에 의하여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 또는 의정지원과(02-780-26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어의 표기
  -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 ‘공직선거법’ ⇒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으로 표기
  - ◆ ‘제58조’ ⇒ ‘58’로 표기
  - ◆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로 표기
  - ◆ ‘대통령선거’ ⇒ ‘대선’으로 표기

# C · O · N · T · E · N · T · S

## 01 선거운동 일반 ..... 4

1. 선거운동의 개념 / 6
2. 선거운동기간 / 10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13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 17

## 02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할 수 있는 활동 ..... 24

1. 의정활동보고 관련 / 26
2.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 35
3. 팬클럽 등 설치·운영 관련 / 40
4. 각종 행사 개최·참석 관련 / 47
5. 상장(부상) 수여 관련 / 53
6. 금품 제공 관련 / 56
7. 명함 등 인쇄물 배부 관련 / 74
8.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 81
9. 추석 등 명절 관련 / 86
10. 기자회견·보도자료 제공 관련 / 88

# 목차

## 03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90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 92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 100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 102
4. 선거기간개시일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104

## 0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10

1. 선거사무소 / 112
2. 선거사무관계자 / 122
3. 예비후보자 명함 / 126
4. 예비후보자홍보물 / 134
5. 예비후보자공약집 / 139
6. 전 화 / 142
7. 어깨띠 및 표지물 / 144

## 부록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표 / 148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Part 01

## 선거운동 일반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기간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 01

## 선거운동 일반



### 1. 선거운동의 개념 (법 §58)

#### ①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 · 녹음기 ·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함)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체·시기·내용·장소·방법·대상·범위·행위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2. 9.선고 2010도10451)
-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선거가 특정되어야 하고, 둘째,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셋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넷째,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가 있어야 함.
- 어떠한 특정한 행위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 내지 원칙에 따라 개별적·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선거법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다분히 포괄적이고 불특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개의 다양한 행위나 활동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의 유형을 체계화하여 법으로 망라하는데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은 그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 내지는 원칙만을 정한데 따른 것임.
- 제3자가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

인의 당선 목적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음. (대법원 2004. 4. 27.선고 2002도315)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연설장소 등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자동차·확성장치 등 임차행위,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전물 사전 제작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예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실시행위 등을 말함. (헌법재판소 2005.10.27.결정 2004헌바41)
- ‘입후보예정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대법원 2011. 3. 10.선고 2011도168)



## 할 수 있는 사례

- 사교적인 모임에서 연장자의 선거에 관한 격려말에 화답하여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니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1999. 10. 20.선고 98고합181)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거나, 후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1996. 2. 29. 회답)

- 정당이 「○○자동차 정상화 캠페인」과 같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일회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2001. 4. 12. 회답)
- 학교의 홈페이지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행위 (2002. 5. 1. 회답)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행위 (2008. 3. 14. 회답)
  - ⇒ 이 경우이라도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 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1996. 2. 29. 회답)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피추천자인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를 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등을 작성·배부하는 행위 (1991. 5. 18. 회답)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1996. 2. 29. 회답)
- 정당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캠페인을 실시하더라도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역 현안문제가 아닌 사안의 해결을 명목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2001. 4. 12. 회답)

## 2. 선거운동기간 (법 §59)

### ① 법규요약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2012. 11. 27.~12. 18. 22일간)까지를 말함.
- 예 외
  -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 등록이후 가능**
    - ※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240일(2012. 4. 23.)부터임.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가능**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제한은 입법목적·내용,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헌법재판소 2001. 8. 30.결정 2000헌마121·202, 94헌마97, 93헌가4·6)

-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됨.
- 여론조사가 허용되는 기간의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4183)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일전 180일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수집을 위한 논문 공모를 고지하기 위하여 그 목적 범위안에서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2003. 5. 17. 회답)
  - ⇒ 다만, 필요이상으로 자주 광고하거나 고지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발의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성명서로 발표하면서 성명서 내용과 발표사실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2005. 10. 19. 회답)
-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 533)

-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행위 (대법원 2001. 7. 13.선고 2001도16)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서 행사의 실제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대법원 1994. 6. 14.선고 94도903)
  - ⇒ 행위 양태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금지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음.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 (대법원 2005. 9. 9.선고 2005도2014)
- 관공서 등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행위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10. 28.선고 2010고합196)



###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60)

#### ① 법규요약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 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다만, 위 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호 내지 ⑧호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경기도 고양시 주민자치위원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행하여지는 선거의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2005. 11. 29. 회답)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2010. 3. 4. 회답)
- 선거범죄로 선거일 전일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008. 1. 28. 회답)





##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53조제1항의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장 등)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994. 12. 22. 회답)
  - ▷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직을 가지고 법 제60조제2항의 선거사무장 등을 맡는 행위 (2002. 3. 18.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2002. 11. 29. 회답)
  -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행위 등)을 하는 행위 (2002. 11. 29. 회답)
- 일반범으로서 선거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자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8. 11. 8. 회답)
  - ▷ 다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9세 미만인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임. (2008. 11. 8.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미성년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하여 촬영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에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11. 12. 30.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10세)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라는 등 총 5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1996. 5. 9.선고 95고합415)
- 지방공무원이 공무원이나 그 가족 중 선거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적사항을 통보받고, 이를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건네준 행위 (서울지방법원 1999. 10. 28. 선고 99고합851)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행위 (서울고등법원 2004. 10. 19.선고 2004노1844)
- 지방의회의원이자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市)조직인 시(市)새마을회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행위 (대법원 2009. 5. 13.선고 2009도327)
  - ⇒ 법 제60조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서 그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일정과 의정보고회에 초청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울산지방법원 2008. 9. 9.선고 2008고합170)
-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법 §87)

### ① 법규요약

- 원칙적으로 기관·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단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sup>1)</sup>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sup>2)</sup>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정치인 팬클럽도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됨.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후보자나 정당도 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002. 5. 31. 회답)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 할 수 있는 사례

- 노동조합이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 (2006. 4. 28. 회답)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2000. 3. 22. 회답)
  - ⇨ 다만, 지지·반대 의견을 게재한 신문광고·현수막의 거리게시 또는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법 제90조·제93조·제95조에 위반됨.
-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 ⇨ 다만,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인쇄물 배포 등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2007. 10. 2. 회답)
  - ⇨ 다만,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그리고 집회가 선거기간중에도 계속될 경우 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며, 그 단체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경우 법 제87조에 의하여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됨.
- 노동조합이 지지 후보자 파악을 위해 산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 제108조나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RS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2007. 6. 1. 회답)
- 노동조합이 공직선거 정책연대 대상 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전 조합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행위 (2007. 10. 19. 회답)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으로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2007. 11. 21. 회답)
  -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금지됨.
-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당의 후보와 B당의 후보가 지역노조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 제60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9. 3. 17. 회답)
- 노동조합이 지지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사실이나 그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2008. 3. 25. 회답)
  - ⇒ 이 경우 별도의 인쇄물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때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됨.
- 회원총회에서 선거기간전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지지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2004. 1. 9. 회답)
  - ⇒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여객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확장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이 대담·토론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 (1997. 11. 12. 회답)
-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히 등산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1999. 7. 21. 회답)
  - ⇒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7조제2항에 위반됨.
-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의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4. 3. 29. 회답)

⇒ 다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하는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은 할 수 없음.

● 대한의사협회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2. 5. 31. 회답)

●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4. 11. 16. 회답)

⇒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거나,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0. 3. 27. 회답)

●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2004. 3. 24.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2006. 4. 13. 회답)

●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을 설립하는 행위 (2007. 2. 26. 회답)

⇒ 다만,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포럼의 대표가 되거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은 무방함.

- 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 노동조합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옥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초청하여 공약 등이 포함된 강연을 듣게 하는 행위 (2007. 11. 21. 회답)
- 단체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9. 3. 회답)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을 위한 ARS 투표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라디오 광고를 하는 행위 (2007. 11. 19. 회답)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총회 등 여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결의하는 행위 (2007. 11. 21. 회답)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를 결정한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등을 노동조합 건물의 외벽에 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2007. 11. 21. 회답)
- 시민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하여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시민단체에서 모집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유세, 웹진 배포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10. 3. 31, 2010. 4. 2. 회답)

정 책 선 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Part 02

###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할 수 있는 활동

1. 의정활동보고 관련
2.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3. 팬클럽 등 설치·운영 관련
4. 각종 행사 개최·참석 관련
5. 상장(부상) 수여 관련
6. 금품 제공 관련
7. 명함 등 인쇄물 배부 관련
8.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9. 추석 등 명절 관련
10. 기자회견·보도자료 제공 관련

# 02



##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할 수 있는 활동

### 1. 의정활동보고 관련 (법 §111)

#### ① 법규요약

- 주 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 금지기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12. 9. 20.~12. 19.)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방법은 상시 가능
-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음.
- 고지벽보·장소표지 첨부·게시
  -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시·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면·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음.

-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활동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 제외)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음.

- 고지벽보와 표지는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함.

●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등

-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표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 교부된 세대주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국민(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이 아님. 왜냐하면 의정활동보고의 형식과 명칭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당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기 때문임. (헌법재판소 1996. 3. 28.결정 96헌마18)
- 법 제111조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과 횡수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선거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대법원 2009. 4. 23.선고 2009도832)

### 1) 보고주체



### 할 수 있는 사례

- 나레이터가 의정활동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형식으로 의정보고 녹화영상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행위
-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의정보고서를 공개된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 장소에서 배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가 제3자 화법으로 설명하는 형식의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를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하여 배부하는 행위
-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내용을 소식지로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의정보고 녹화물을 선거구민에게 상영하는 행위
- 정당이 기관지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2006. 11. 27. 회답)

## 2) 보고대상



### 할 수 있는 사례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1994. 5. 13.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행위 (1995. 12. 27. 회답)

### 3) 보고장소



#### 할 수 있는 사례

-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나 집회 또는 모임 등의 장소에 가서 주최자의 허락하에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의정보고용 영상물을 방영하는 행위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 단순히 의정활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다만, 의정활동영상의 상영장소와 시간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등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에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이 참석하여야 할 것임.
- 국회의원이 거리 및 시장 등에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에 들어온 지역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 (2010. 7. 16.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등 옥외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2007. 7. 16. 회답)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10. 6. 30. 회답)

#### 4) 보고금지기간



##### 할 수 있는 사례

- 언제든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포함)·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의정보고 금지기간에 그 지역의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 금지기간 중 자신이 행한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되도록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하는 행위



## 5) 보고내용



###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서의 서두나 말미에 신년인사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도된 신문 칼럼을 게재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행하는 방송출연 등 활동 일정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고지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자를 두어 내빈을 소개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보자가 되려는 당직자 등을 의례적으로 인사시키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장에 동행한 후보자가 되려는 당직자를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키거나 입후보예정사실을 밝혀 소개하는 행위
-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출판기념회의 참석자 성명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후원회장이나 다른 사람의 인사문을 게재하거나 의정보고회장에 서 동료의원이나 후원회장이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내가 들은 최고의 5분 발언」 등 국회의장의 발언을 게재하는 행위
- 생일축하 내용을 게재하여 생일을 맞은 유권자에게만 의정보고서를 발송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서에 신년 인사장을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동봉하여 발송하는 행위
- 책임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으로 보고하는 행위

## 6) 보고방법



###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서를 우편 배달, 신문삽입 배부, 우편함 투입, 민원실 비치, 마을회관 비치, 호별 투입, 종교시설 비치,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 가두 배부하는 행위
- 이·미용실, 식당 등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여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 배부 봉투에 보고자의 소속정당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장소에 입당원서와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비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입당원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받아 당해 시·도당 또는 후원회에 전달하는 행위
- 선거구가 중첩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서로에 대한 지지·선전하는 내용 없이 공동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고지벽보의 첩부시기·수량·규격의 범위에서 아파트 LCD 모니터를 이용하여 의정보고회를 고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인터넷팩스발송 대행사이트와 같은 용역대행사에 의뢰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전송하는 행위
- MMS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의정보고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위하여 자신의 의회활동이나 직무활동으로 출연한 TV토론내용이 수록된 DVD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주민에게 배부되는 의정보고서에 대선예비주자와 함께 했던 활동사항과 사진을 게재함에 있어 선거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를 넘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여 선전에 이르게 하는 행위 (2007. 2. 26. 회답)
-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2011. 2. 10. 회답)
- 의정보고서를 가두살포 또는 호별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 2.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법 §103⑤)

### ① 법규요약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12. 9. 20.~12. 19.)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음.
  - ⇒ 선거일전 90일전이라도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제한기간중 금지되는 출판기념회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저술한 저서나 역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임. 다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넉넉히 호소하고 있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고, 약 1,500여 명이 참석했던 출판기념회의 규모에 비하여 그 수가 과도한 50,000명에게 초청장(65%가 선거구민임)을 발송하였고,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대상자도 12,000여

명에 이르는 점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 할 수 있는 사례

### ● 서적 출판

- 서적의 표지에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2006. 2. 13. 회답)
- 출판사나 서점 등 판매업자가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 개최

- 출판사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 서적광고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출판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 및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서적광고를 하는 행위 (2011. 2. 25. 회답)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됨.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창준위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현수막·포스터 등 게시 범위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2004. 7. 7, 2006. 2. 13, 2011. 9. 27. 회답)

⇒ 다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음.

- 서적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서점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2011. 9. 27. 회답)

⇒ 다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진·경력 등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출판기념회를 축하·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한 자로부터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 출판기념회시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화환을 대신하여 쌀화환을 받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 출판기념회 저작물 판매 수익금은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출판기념회에서 제공받은 물품 등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행위 (2010. 4. 28. 회답)
  - ⇒ 다만,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출판기념회 개최 포함)하는 행위
  - ⇒ 다만,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위반됨.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저서를 서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독자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적을 사실상 선거홍보물화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2010. 9. 15. 회답)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부각시키고 저자의 정치적 경력, 선거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1995. 4. 3. 회답)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하,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2011. 10. 18, 2011. 11. 28, 2011. 11. 30. 회답)
-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을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위한 신문광고에 출판기념회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도록 고지하는 행위
- 서적판매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거리를 오고가는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저서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행위

### 3. 팬클럽 등 설치·운영 관련 (법 §87②, §89①)

#### ① 법규요약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법 §87②)
- 누구든지 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법 §89①)
  - ⇒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유사기관이라 함은 외관상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활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함.

- 사조직이라 함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적인 조직을 의미하므로, 설사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선거법상의 사조직에 해당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 정당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 선거에 당해서 전국에 걸쳐 선거운동의 준비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평상적인 운용체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됨. (헌법재판소 2001. 10. 25. 결정 2000헌마193)
  - ⇒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대책기구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 1개만을 설치할 수 있음.
- 정치인 팬클럽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활동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에 이른 때에는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음.
- 팬클럽이 행사 목적에 맞는 제한된 범위안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행위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산행·체육대회, 학술·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해당 입후보예정자가 계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정치인 팬클럽 명의의 기부행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팬클럽의 경비 또는 팬클럽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법」 제2조 또는 제31조에 위반됨.

## 1) 조직 결성 · 운영 등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 · 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 ·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헌 · 당규에서 정한 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포럼의 대표가 되거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강연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법 제87조 및 제89조에 의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연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홍보 · 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을 두거나(대선거획팀, 온라인홍보팀, 정책홍보팀 등)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팬클럽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모금하는 행위
- 팬클럽의 정관·규약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는 행위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2) ON-LINE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하는 행위
-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 발송,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을 전송하는 행위
  -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는 위반됨.

- 팬클럽 회원(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 포함)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3) OFF-LINE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 다만,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87조·제89조·제103조·제115조·제254조 등에 위반됨.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를 위해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당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초청하여 함께 등산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행위
  - ⇒ 다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

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참석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 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학술·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됨.
-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피켓이나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다만, 호별방문,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동창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환담이 오가는 자연스런 기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히는 행위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됨.
- 국회의원이 산악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소속회원들에게 산악회장 명의로 산행행사를 알리는 의례적인 안내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다만, 소속회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발대식 등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지원을 위한 조직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선·낙선운동을 도모하는 팬클럽 등 단체의 회원들에게 그 소속 단체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 등이 게재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옷이나 기념품 등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팬클럽이 법 제112조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캐리커처 포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거나 달력, 티셔츠 등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4. 각종 행사 개최 · 참석 관련 (법 §101 · §103 · §112②)

### ① 법규요약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 · 정책의 설명회 · 토론회 · 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할 수 있음. (규칙 §47의2제1호바목)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학술 · 문화 · 체육 · 예술 ·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 (규칙 §47의2제2호나목)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12. 11. 27.~12. 19.)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 · 대담 또는 대담 · 토론회를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 시국강연회 · 좌담회 ·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법 §101)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의 모임(명칭여하 불문)을 개최할 수 없음. (법 §103②)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법 §103③)
-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음. (법 §112②제2호마목)

## ② 주요선례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의 주민간담회 개최 등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또는 현안문제와 관련된 의견수렴의 목적 범위안에서 일회성으로 선거구민과의 대화 모임(청소년과의 대화)을 개최하는 행위
  - 순수하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이 경우 그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하는 행위
    - ⇨ 토론의 내용과 현안의 시급성, 토론회 개최 시기·방법, 참석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이르는 때에는 시기에 따라 법 제10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선거기간 전에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의정보고가 금지된 시기에 지역구국회의원을 참여시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법 제111조에, 간담회의 개최·진행 과정에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됨.
  -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인터넷언론사가 현장에서 취재·보도하는 행위
  - 국회의원을 홍보·선전함이 없이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단순히 일시와 장소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고지방송을 하거나 행사장소의 입구와 내부에 행사장 표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특별한 현안과 관계없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여 고지방송을 하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국회의원 친목단체인 ‘□□통합포럼’이 법 제11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에 연탄을 기부하거나 기증하는 행위

⇒ 다만, 그 과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통상적인 동문회·종친회 등 개최

- 회장이 입후보예정자인 동문회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동문회 모임을 이용하여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없이 통상적인 종친회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백일장대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그 지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 다만, 그 활동에 있어 자신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 등의 지위에 걸맞는 행사 참석

- 국회의원이 동창회 등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 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법 제93조제1항에 위반됨.

- 중소기업청(본청 및 그 지방청 포함)이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행사(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정책간담회,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 또는 직무와 관련 있는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패널 등으로 참여하는 행위
  - ⇒ 다만, 동 행사의 개최·진행과정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지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면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을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법 제9조, 제86조, 제103조, 제254조 등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으로 인사하는 행위
  - ⇒ 다만,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국회의원이 당원 및 지역 인사들과 함께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어깨띠를 부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위반됨.
- □ □ 항공우주엑스포행사 홍보물에 개최지역 출신인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례적인 축사문(선거일전 90일전에는 의정활동내용 포함)을 게재하고 국회의원 명의 앞에 당명이나 특정 선거에서의 지지·추천·반대의 내용없는 소속 정당의 통상적인 캐치프레이즈를 게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계모임에서 단순한 부부동반 관광을 가는 행위
  - ⇒ 다만, 계모임을 이용하여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103조, 제11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가 관광버스 임차 등 산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행위
  - ⇒ 다만, 동 행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됨.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관 2012년 자활인대회시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공정하게 초청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게 하거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입후보예정자의 의례적인 내용의 행사 축하 메시지를 상영하는 행위 (2012. 5. 14. 회답)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 (2012. 5. 14. 회답)
  - ▷ 다만, 초청받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됨.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정책공약개발 토론회 · 공청회 등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 ·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정계복귀선언대회 또는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
- ‘국회의원 □□□의 리더십 아카데미’, ‘FC□□□유소년 축구클럽’과 같이 그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강좌나 축구단을 개설 · 운영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그 임원의 명의로 또는 그 임원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 주민들의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에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짝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등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  
 ⇨ 다만, 선거구민의 청와대·국회 방문절차에 관한 문의에 단순히 안내해 주는 행위는 무방함.
- 입후보예정자가 노인회의 야유회 등 관광 행사에 떡·막걸리·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축제 준비를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하계수련회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이 지역의 행사(○○단체 총회나 이·취임식 등)에 초청을 받아 축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에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지역정책 및 현안이나 공약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좌담회·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5. 상장(부상) 수여 관련 (법 §112②)

### ① 법규요약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음. (법 §112②제1호 카목)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 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법 §112조②제2호자목)
  -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12. 4. 23.)부터 선거일(12. 19.)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됨.
-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 (법 §112②제2호자목)
  -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12. 4. 23.)부터 선거일(12. 19.)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됨.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수여는 제외)하거나 식사료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음. (법 §112②제2호 타목)

## ② 주요선례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행사에서 한정된 범위안의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해외연수 등 포상을 수여하는 행위
-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의례적인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2004. 12. 17. 회답)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동문회장으로서 소속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정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당활동에 필요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 (2004. 10. 29. 회답)
  - ⇒ 다만, 정당활동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필요이상으로 자주 행사를 개최하여 시상을 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업문제에 관한 사진전 개최·간담회 및 정책자료의 발간을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고 우수작품 출품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 (2009. 5. 8.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농업인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는 단체의 내부행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
- 입후보예정자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지급하는 행위
  -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각급 학교의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 축제·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에게 상장을 하는 행위 (2005. 2. 4. 회답)
- JC(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장단의 이·취임식·총회 등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
  - ⇨ 다만,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 불가)하는 행위는 무방함.
- 정당의 당내경선관리기구 또는 경선후보자의 경선선거사무소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2007. 7. 16. 회답)

## 6. 금품 제공 관련 (법 §112②)

### ① 법규요약

#### ● 기부행위의 개념 (법 §112)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 주제별 제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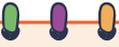
조문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한내용
§113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li> <li>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 금지</li> </ul>
§114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 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 기간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115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116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117	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제31조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법 §112②제1호)

-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크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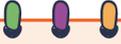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지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당내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대선 당내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30인(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가족은 그 인원수에서 제외)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2) 의례적 행위 (법 §112②제2호)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함.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sup>3)</sup>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채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관계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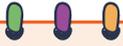
3) 후보자·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란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예비후보자는 30인, 현직 국회의원은 10인을 말함(이 경우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료의 음식물 또는 짠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법 §112②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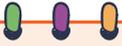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4) 직무상의 행위 (법 §112②제4호)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입후보예정자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을 제외함)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물품구매 · 공사 ·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법 제112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 · 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함으로써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기부행위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달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6. 3. 22.선고 96도347)
-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고,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않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6. 28.선고 96도1063)
-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금품 또는 이익 등의 사실상의 출연자에 한정되지 않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있는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 기부행위 상대방이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

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제공'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라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가 됨.
-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교부한 것만으로도 기부행위가 됨.

## 1) 화환 · 화분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회의원 명의의 화환 제공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6.25 민간인 학살 유족단체'가 개최하는 추모 위령제 행사에 국회의원 명의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제4회 '200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추모 전국합동위령제와 해원곳' 행사에 국회의원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행위 (2006. 12. 1.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하는 은사(선거구민)의 정년퇴임식에 축하난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에 축하화환 제공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행위  
⇒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개업식에 의례적 내용의 축전 발송행위는 무방함.

## 2) 축의 · 부의금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직 ·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에 통상적인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혼사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의 합동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선음악회를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조사에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화를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혼사에 직·성명이 기재된 축기를 게시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소속 운영위원의 애경사에 축의금·조의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3)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장학기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수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됨.
- 지방의원인 핸드볼협회장이 운영관행에 따라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소속협회의 이사회에서 책정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행위
- 종친회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누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반됨.
- 국회의원이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2011. 11. 8. 회답)

⇒ 법 제115조에 따라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이와 별도의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것도 자신 소속 교파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장학금의 모금 및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회·학교의 장학위원회 기타 재단·기금 등의 구성원으로서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 등에 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인 출신 모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선정된 지역구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 4) 식사·다과·음료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1,000원 이내의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제사에 참석한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소년·소녀가장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 관람과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단체의 경비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회갑연·고회연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2004. 11. 15. 회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하는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 해외 출장시 기부행위 상대방인 동행취재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 구호 · 의연금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 ·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 국회의원이 선거구내에서 장애인단체(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2004. 10. 8. 회답)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됨.
- 국회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베품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 · 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2005. 7. 8. 회답)
- 입후보예정자가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2004. 12. 22. 회답)
- 국회의원이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의 구호 ·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2005. 6. 25. 회답)
- 국회의원이 「도서관법」등에서 정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행위  
⇒ 기증하는 도서에 자신의 소속정당명과 직 · 성명, 기원문구 등을 게재하여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이 경우 도서를 기증받은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등록규정 등에 따라 해당

도서에 기증자를 표시하여 대출·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

- 정당이 설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의연금품(연탄)을 제공하는 행위 (2008. 2. 4. 회답)
  - ⇒ 연탄나눔운동본부로부터 연탄을 공급받아 동 본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연탄 배달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예비후보자가 한센병 가족들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2007. 4. 18. 회답)
- 정당이 청소·빨래·이발·목욕·건강체조·노래·집수리·반찬 만들어 주기(반찬재료를 준비하여 만들어 주는 경우를 제외함) 등 당원들의 역무를 제공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2005. 12. 16. 회답)
  - ⇒ 그 범위를 벗어나 쌀·생필품·음식물·재료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위반됨.
-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재해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속 당원에게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008. 1. 31.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연말연시에 선거구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7도 617)

## 6) 선물 · 기념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주한 외교사절을 만나거나 의원친선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 접견자 및 관계자들에게 우정의 표시로 기념품(국회의원 직 · 성명 표기)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가 시 · 도당의 계획하에 정당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당원수첩을 제작하여 소속 당원에게 배부하거나 당원협의회장의 의례적인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과 지역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국회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전달하는 행위와 단순히 기념 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지역내 초 · 중 · 고 학생들이 국회견학 후 특정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당해 국회의원실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지역구내 초등학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7) 무료민원상담 등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 사무기기 · 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법률 · 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행위 (1997. 8. 22. 회답)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무료의 민원상담으로서 단순한 취업상담이 아닌 취업을 중개 · 알선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 7. 명함 등 인쇄물 배부 관련 (법 §93 · §254)

### ① 법규요약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12. 6. 22.~12. 19.)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이하 이 표에서 같음)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음. (법 §93①)  
⇒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등이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함.
-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법 §254②)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12. 9. 20.~12. 19.)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사진 등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음. (법 §93②)
- 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법 §93②)  
⇒ 다만, 선거기간(2012. 11. 27.~12. 19.)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무방
- 아래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회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음.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19①4호)

-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및 비서

## ② 주요선례

### 1) 명함



####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사진·현직·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을 게재하는 행위
- PET 소재의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간단한 문구(예: 푸르른 자연을 생각하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음 속에 한 점 푸르른 여유를..., 마음에 자연을 담아보세요~)나 구호(슬로건, 캐치프레이즈)를 게재하는 행위
- 당직자의 명함에 '직능인·자영업·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일하는 ○○당' 등 통상적인 정강·정책내용이나 구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접이식 명함(접은 상태의 명함 크기: 가로 9cm, 세로 5.25cm) 및 접이식 명함의 안쪽에 배경으로 '산' 사진을 넣는 행위
-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홍길동, ☎ 000-0000, 후원금모금 ARS 0000-0000" 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명함을 작성하는 행위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후원회의 대표자·회계책임자가 선거구민 등과의 인사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회의 가입과 후원금의 기부를 권유·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사람이 ‘당로고, ○○선거○○당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등의 내용을 게재·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2007. 11. 15.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의 명함에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 안쪽면에 KTX 시간표를 넣어 선거구민과 인사시 교부하는 행위
-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와 같은 내용을 명함에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업무용 명함에 경력 또는 학력을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원회 안내장을 발송함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을 동봉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정치인 팬클럽의 대표자가 해당 정치인의 성명을 게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천지부장 홍길동’, ‘○○○사랑 인천지부장 홍길동’ 등)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2007. 1. 19. 회답)

## 2) 인사장 · 연하장 · 광고 등



### 판단기준

- 법 제93조제1항의 “인사장”이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성명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사람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예의로서 안부를 묻거나 안경을 비는 내용, 또는 감사하거나 축하하거나 기타 격식을 차려야 할 일 등에 예의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 등의 글이 적힌 문서를 의미함. (헌법재판소 2001. 8. 30.결정 99헌바92 · 2000헌바39 · 2000헌마167 · 168 · 199 · 205 · 280 병합)
- ‘연하장’이란 새해를 축하하는 글이나 그림이 담긴 서장(편지)으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중 직접 찾아가 새해인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서면으로 새해인사를 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연하장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의례적인 연하장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2000. 2. 10. 회답)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에 서적 광고는 포함되지 아니함.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 추천 ·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인쇄물 ·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탈당성명서를 당해 후원회의 회원이나 탈당전 지역당 원협의회의 당직자 등 한정된 범위안의 인사들에게 우송하는 행위
  -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우송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됨.
- 국회의원이 해당 후원회 회원의 경조사에 자신의 지지·선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전보나 편지를 보내는 행위
- 국회의원이 정책자료집을 발행하여 언론사, 도서관, 관련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핵심당원을 선별하여 추석,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피해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피해 주민이 서명한 민원을 관 계기관에 제출하고 선거일전 180일전에 단순히 그 결과를 ○○피해대책위원장 명의로 서명한 주민에게 통보하는 행위
  - ⇒ 다만, 민원사항 제출 결과를 통보하는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명의를 밝혀 인쇄물을 배 부하는 때에는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동창회의 회원명부에 업체나 사무소를 가진 동문들이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것 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입후보예정자가 여느 동문과 똑같이 졸업기수, 업체, 주소, 전화, 인물사진 혹은 업체전경 등만 기재하여 선거일전 90일전에 광고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 고를 하는 행위
  - ⇒ 다만, 변호사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계 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법 제93조제1항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고객),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에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히 광고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2005. 10. 6. 회답)
  - ⇒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공공기관(한국국제협력단)의 명예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없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광고(봉사단원 모집)에 출연하는 행위 (2010. 3. 29. 회답)
  -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친목단체의 회보에 입후보예정자(소속회원)의 학력·경력 등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소속당원·조합원 또는 회원 모두에게 제한없이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에 자신의 가족사진이나 활동사진 또는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생활정보매거진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 사진, 인사말 등의 축사를 게재하거나 직·성명, 약력, 사진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서적판매광고를 하면서 수입금의 일부를 특정 정당의 후원금이 나 당비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특정 정당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법안발의 사실이나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 내용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2005. 10. 19. 회답)



## 8.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법 §90 · §254)

### ① 법규요약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표시물·상징물(이하 이 표에서 '시설물 등'이라 함)을 설치·게시·배부·판매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더라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법 §90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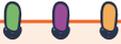
⇒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무방함.

-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법 §254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예외 (무방한 행위, 규칙 §47의2)

####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창준위 포함)의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 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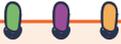


⇒ 정당은 선거기간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당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으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2) 직무상·업무상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3) 의례적인 행위

- 민속절·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② 주요선례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국회의원 사무소의 간판에 국회의원의 직명·성명·소속정당명·정당마크·지역구명을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 사무소의 간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국회의원 사무소 외벽에 주최자인 국회의원 명의의 정책토론회 안내 또는 의정활동의 결과물, 당해 국회의원의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사무소 외벽에 명절을 맞아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동 현수막에 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그를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때에는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통상적인 간판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 사무소에 선전구호와 캐리커처를 게재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식선거후보자 선출을 위

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 고지, 공직선거후보자 지망생 모집, 정책토론회 개최 사실 홍보를 위한 정당명의(로고 포함)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2010. 2. 26. 회답)

⇒ 다만,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함.

-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의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에 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고지현수막(국회의원의 직·성명 표시)·벽보 등을 국회의원사무소 외에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귀성환영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단체와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고지현수막에 그의 직명·성명을 표기하여 행사장 입구나 내부에 게시하는 범위를 넘어 거리에 게시하거나 초청장을 공동주최하는 단체의 회원이나 그 행사와 관련 있는 한정된 자에게 발송하는 범위를 넘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통상적인 간판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외에 직업상의 사무소로 볼 수 없는 ‘공학박사’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다른 단체의 명칭을 함께 게재하는 행위
-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상징구호로 사용하고 있는 별명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넣은 문구를 붙여놓거나 특정 정치인을 선전하면서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 (1995. 6. 23. 회답)
-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활동으로서 ‘희망○○’라는 명칭, “보통△△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선거구호, 사업주관 정당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저금통을 배부·판매하는 행위 (2002. 12. 2. 회답)

## 9. 추석 등 명절 관련 (법 §112②)

### ① 법규요약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 포함)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법 §112②제2호나목)

### ② 주요선례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평등한 명절되세요’ 라는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성명을 밝혀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 명절 보내세요.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설·추석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됨.
- 국회의원이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명절을 맞아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보조하는데 대한 격려로서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위반될 것이나,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에게 정치자금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국회의원이 선거구내에서 장애인단체(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재래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재래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해당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추석인사 등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 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10. 기자회견 · 보도자료 제공 관련



###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인 국무위원이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대담 · 인터뷰를 하는 행위 (2011. 8. 19. 회답)
-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자의 대변인이 기자를 상대로 공천신청자의 정치적 견해, 공약발표를 단순히 대행하는 행위 (2010. 3. 25. 회답)  
⇒ 다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연합하여 지지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지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관한 성명서 · 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2009. 12. 29. 회답)  
⇒ 다만, 별도의 인쇄물 · 시설물을 통하여 지지할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위반됨.
-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에게 예비후보자의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사본을 교육자료로 배부하는 행위 (2008. 3. 5. 회답)
- 출판사가 출판하려는 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취재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부하거나 출판하려는 책에 포함시키는 행위 (2007. 11. 29. 회답)
- 대 · 중소기업상생협회가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중소기업정책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후 약 1만개 중소기업업체를 대상으로 각 입후보예정자들의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 (2007. 9. 6. 회답)
- 대선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정당에서 기자회견 · 당원집회 등에서 타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 (2007. 7. 4. 회답)

- 선거 출마에 따른 의지·정치적 견해 등을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시정계획·성과 등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히 답변하는 행위 (2006. 3. 14. 회답)
-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적변경 등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1997. 12. 16.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기자를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요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기간전에 당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게 하는 행위 (2000. 3. 22. 회답)
- 국회의원이 자신의 신상에 관해 해명하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그 보도자료·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2007. 5. 14. 회답)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연설문·인터뷰자료·선거공약·토론회자료·보도자료·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건네주는 행위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008)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탈당성명서를 탈당 전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우송하는 행위 (2002. 11. 7. 회답)
  - ⇒ 당해 국회의원후원회의 회원이나 탈당 전 당직자 등 한정된 범위안의 인사들에게 우송하는 것은 무방함.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Part 03

##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4. 선거기간개시일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 03

##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법 §59 · §82의4 · §82의5)

#### ① 법규요약



- 주 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 법: 문자(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발송시에는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의무가 없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 서비스번호나 E-mail 주소)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전화번호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유의사항 (아래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도 같음)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온라인, 오프라인 등 어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음.

⇒ 각급선거관위(읍·면·동선거관위 제외) 또는 후보자는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스마트 홈패드에 내장된 인터넷전화 등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 이하의 수신대상자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때에는 전송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12. 2. 16. 회답)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의 배경 서체(font)의 크기·색깔 등을 조정하여 발송하는 행위 (2010. 3. 29. 회답)
-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2010. 2. 26.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됨.
  - ▷ 다만, 비방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무방함.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법 제25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음.(법 제251조)

### ● ‘허위사실’의 의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면 충분함.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 ●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임에도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 ●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의 의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 ● 후보자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거리 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인 A가 민·형사상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지금 재판중인 A후보’, ‘현재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후보’라는 표현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A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위반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도1078)

● **한·미FTA에 찬성한 바가 없음에도 찬성하였다고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인 A가 '한·미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설·대담차량에 탑승한 채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의원이 한·미FTA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등의 연설을 하여 A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9. 4. 23.선고 2009도1423)

● **졸업장 위조 등의 방법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최종 정규학력이 '○○전문대학교(현재 ○○대학교)졸업임에도 후보자등록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장의 '생년월일, 입학일자, 성명, 학위등록번호' 등을 고쳐서 복사집에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 '후보자명부'에 허위 기재된 학력을 공표하게 하여 위반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1.선고 2012고합218)

●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9. 6. 25.선고 2009도1936)

● **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1. 3. 10.선고 2011도168)

● **후보자비방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2004. 5. 14.선고 2003도45)

●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 1인에게 후보자를 비방**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국회의원후보자 A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A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만나 국회로 가서 출세를 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라고 후보자를 비방하여 위 받됨. (부산고등법원 2008. 7. 16.선고 2008노376)

● **후보자의 표절과 정치적 배신행위에 대한 비판 글 게시**

후보자의 표절과 정치적 배신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공표한 행위가 비방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일부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선거에 즈음하여 후보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이력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되고 거기에 상당성도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됨. (대법원 2009. 6. 11.선고 2009도1595)

●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후보자의 형 A가 부도를 낸 액수가 약 4억 6,000만원에 불과하고 야반도주하였다거나 특별히 빚을 갚지 않으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후보의 친형이 되는 분이 ○○에 살았습니다. 7억여 원의 부도를 내고, 우리 어렵게 사는 ○○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야반도주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형 A를 비방하여 위반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8. 7. 11.선고 2008고합18)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법 제135조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투표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계모임·팬클럽 등)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19세 미만인 자 등)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함. (2010. 4. 15. 회답)
  - ⇨ 스마트폰용 문자메시지 발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 횟수에 포함됨.
  -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함. (2010. 4. 15. 회답)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 (2010. 3. 29. 회답)

## 2.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법 §59 · §82의4)

### ① 법규요약

- 주 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방 법: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② 주요선례

※ 아래 사례 이외에도 상기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에서 전술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후보자 포함)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2012. 1. 19.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광고 제외)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후보자 포함)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선거구민, 유명인 등)를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2012. 1. 19. 회답)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일반유권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2012. 2. 13. 회답)
- 예비후보자가 길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2012. 2. 13. 회답)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2012. 3. 5. 회답)
-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하여 지지도를 조사하고 실시간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3.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법 §59 · §82의4 · §82의5)

#### ① 법규요약

- 주 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 법: 전자우편(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버톡, 올레톡, 네이트온 등 SNS 포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하여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가능한 모든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음.
- 전송횟수 : 제한 없음.
  -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의 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나 E-mail 주소)

## ② 주요선례

※ 아래 사례 이외에도 상기 '1.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에서 전술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 4. 선거기간개시일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법 §82)

### ① 법규요약

#### ● 시 기: 선거일전 1년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2011. 12. 19.~2012. 11. 26.)

⇒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전일까지 중앙선거위(지역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위원회 포함)에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함.

#### ● 초청대상: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 선거운동기간중(2012. 11. 27.~12. 18.)에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함)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개최가능함.

#### ● 주 체: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sup>4)</sup>,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언론사

#### ● 초청 및 진행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4)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됨.
  -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입후보예정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및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방송·방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로 보아야 함. (1997. 11. 19. 회답)
- 언론기관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음. (2006. 4. 20. 회답)
- 단순한 전화·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인터넷 문자통신, 동행 취재는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화상대담은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됨. (2006. 12. 21. 회답)
-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임. (헌법재판소 1999. 1. 28. 결정 98헌마172)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 경선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행위 (2004. 1. 19. 회답)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4. 13. 회답)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2007. 4. 12. 회답)
- 인터넷언론사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012. 2. 15.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1995. 2. 24. 회답)
- 교육방송이 법 제82조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1997. 11. 12. 회답)
- 종합유선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1997. 11. 19. 회답)
- 종합유선방송사 또는 그들이 연합하여 법 제82조에 따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 (2007. 11. 14. 회답)
-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보도하거나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007. 7. 16. 회답)
- 법 제82조에 따라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만을 초청하여 예비후보자간 정견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6. 3. 29. 회답)
- 언론기관이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노동조합 총연맹이 노동분야의 쟁점이 심도있게 다루어지도록 그 언론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2007. 10. 8. 회답)

- 위성방송사업자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중 진행에 필요한 질문을 공정하게 수집·방송하거나 사전에 제작한 후보자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는 행위 (2007. 11. 25.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언론기관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는 행위 (1995. 4. 6. 회답)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2007. 11. 25. 회답)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 거주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2007. 11. 25.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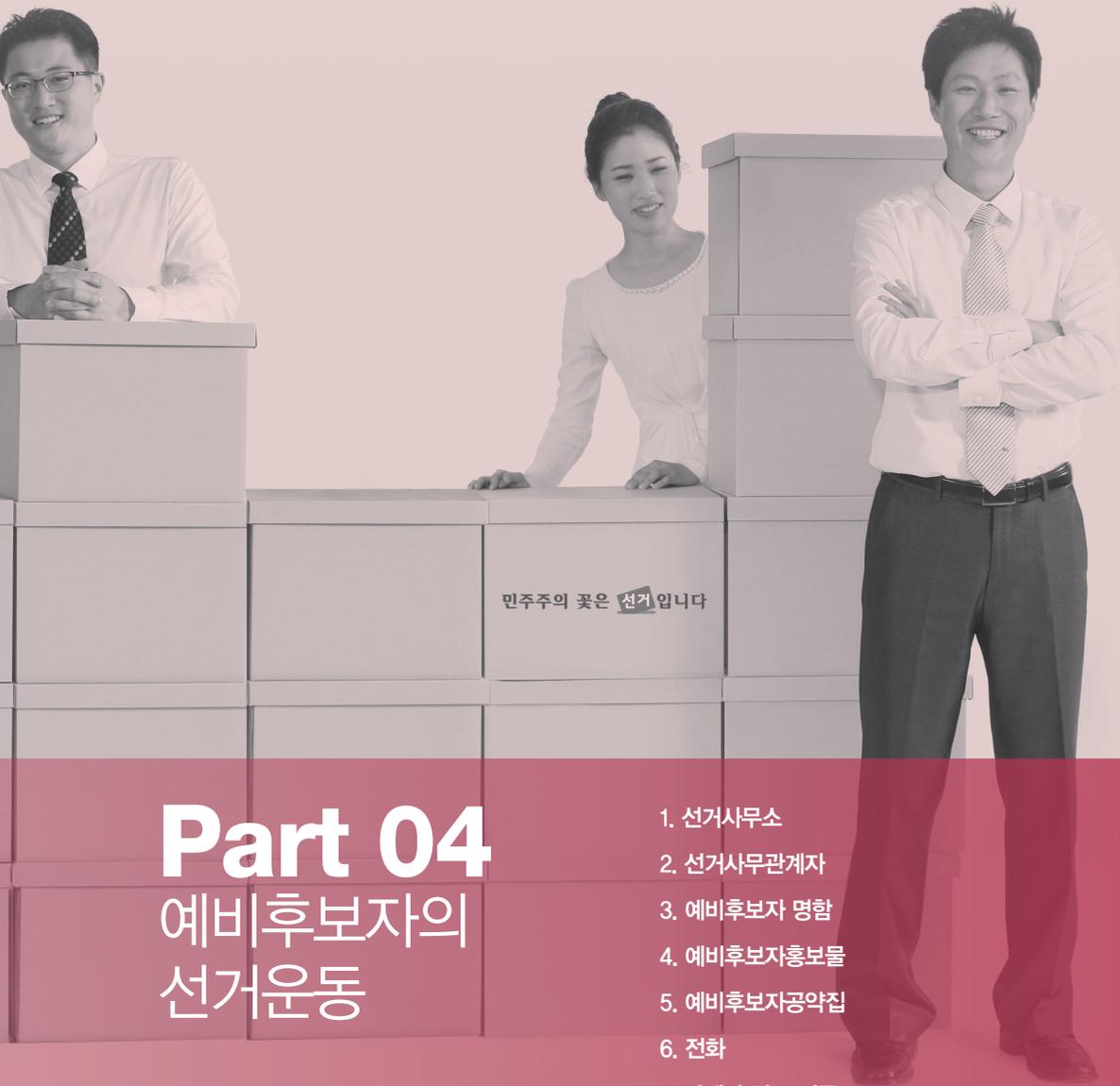


제18대 대통령선거

# 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Part 04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2. 선거사무관계자
3. 예비후보자 명함
4. 예비후보자홍보물
5. 예비후보자공약집
6. 전화
7. 어깨띠 및 표지물

# 04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 선거사무소 (법 §60의3① · §61 · §63①)

#### ① 법규요약

##### 1) 선거사무소 설치 (법 §61 · §63①)

- 주 체 : 예비후보자
- 설치장소
  - 전국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고정된 장소 ·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음.
  -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중앙당사에 둘 수 있음.
- 설치 · 변경 신고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 ·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 후보자 신분시와 달리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 2) 선거사무소 외벽면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법 §60의3①·§61⑥)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수량·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 등 다른 선거운동방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3) 선거사무소 개소식 (법 §112②2호카목)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000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000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도 무방함.

## ② 주요선례

### 1) 선거사무소 설치

#### 판단기준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선거사무소 기능·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구획된 시설 부분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면 이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의 설치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노344)
-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중앙당사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사무소 임대료·전화비 등의 경비는 당사자 간 사전 약정에 의하여 그 사용 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임. (2007. 11. 19. 회답)

#### 할 수 있는 사례

- 출판사 사무실과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위 (1995. 5. 19. 회답)
-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간에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2006. 4. 4. 회답)
- 차량·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2000. 4. 7. 회답)  
⇒ 다만, 고정된 후에는 이동시킬 수 없음.

- 다른 법률의 저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다른 사무실에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 폐업신고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일부를 선거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은 폐업신고는 물론 실제로 있어서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함.



###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 부동산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신을 작성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동창생 등이 위 사무실을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상대로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제주지방법원 1998. 10. 14. 선고 98고합127)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그의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로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6. 3. 14. 회답)
  - ⇒ 다만,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출마의 변·정치적 견해)의 장소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

## 2) 선거사무소 외벽면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 판단기준

- 현수막 등의 규격·색도·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고 횡수에 관계없이 게시된 현수막 등은 교체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됨.
- 선거준비사무소 유리창에 선팅지로 입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선거사무소'를 병기한 문구는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서 법 제90조의 '간판'에 해당함.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해당 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 포함)으로 설치하는 행위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010. 2. 3. 회답)  
⇒ 다만, 간판이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법 제100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보고서의 일부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2008. 3. 11. 회답)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설치시 통상적인 가격범위 안에서 건물 외벽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행위 (2009. 8. 20. 회답)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미성년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하여 촬영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에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11. 12. 30. 회답)
- 건물의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현수막을 건물전체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 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및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내용 (후원회 계좌번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외의 홍보물을 첩부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선거구호·사진 등을 첩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2008. 2. 18. 회답)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보드판을 설치하여 선거구민이 정책제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08. 1. 30. 회답)
  - ⇒ 실제 함께 활동하였거나 원본 사진이 있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 수 없음.

## 제3자의 사진 등 게재방법 관련 TIP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경우

-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 외국인, 어린이, 대통령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찍은 사진의 경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경우

- 합성사진이 아니라면 게재할 수 있음.
- 제3자만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법상 무방함.

### 입후보예정자인 경우

- 입후보예정자와 함께 활동하던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합성사진이 아니면 무방함.
- 활동장면이 아닌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촬영한 사진,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부각시키는 등 그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3) 선거사무소 개소식



#### 판단기준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경우에는 후보자로서 따로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이전에 따른 개소식도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TIP

-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참석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개소식 참석자가 일상적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범위이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에서 가져온 간단한 음료수 등을 예비후보자가 제공받는 것은 무방하며, 이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외에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초청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고지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 등을 발송할 수 없음.

⇒ 또한, 초청장 등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게재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술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 두곡 정도 색소폰 연주를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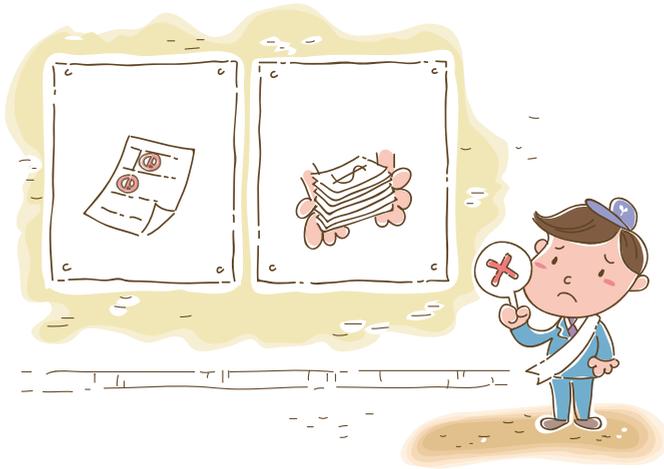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같은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선거사무소 건물의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2008. 3. 10. 회답)  
⇒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시장 재직시의 치적 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 2903)
-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가 정치활동 일환으로 구호·자선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금품 모금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초청장을 통해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화환을 대신하여 쌀화환을 받는다고 고지한 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쌀화환을 제공받는 행위 (2010. 3. 3. 회답)

⇒ 다만, 단순히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격려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 화환을 대신하여 쌀화환을 받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No! rigged election



## 2. 선거사무관계자 (법 §62 · §63 · §135)

### ① 법규요약

#### 1)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법 §62)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됨.
- 장애인 예비후보자<sup>5)</sup>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은 표지를 패용하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가능함.
-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을 모집할 수 있음.

5) 장애인 예비후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①모든 등급의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②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그 밖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2) 선거사무관계자 선임·해임·교체 신고 (법 §63)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선임·해임·교체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함.
  - ⇒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함)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등'이라 함)는 중앙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표지 교부신청을 할 필요는 없음.
  -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이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3)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보상 (법 §135)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 다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수당과 실비의 금액
  -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 수당 7만원 이내,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1호의 실비(숙박료 제외)
  -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수당 3만원 이내,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의 실비(숙박료 제외)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선거사무장 선임신고는 그 신고서가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1985. 6. 28. 선고 81노2596)
- 유급선거사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하여야 함.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이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실비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들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1997. 11. 27, 2004. 3. 31. 회답)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2008. 3. 17. 회답)
  - ⇒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제3항에,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각각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 (2006. 4. 24. 회답)

- ⇒ 다만,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예비후보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법 제62조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운영하는 외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행위 (2008. 12. 10. 회답)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또는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함.
  - ⇒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가 가능하나, 지지호소는 선거운동기간중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음.



### 3. 예비후보자 명함 (법 §60의3)

#### ① 법규요약

##### 1) 작성방법

-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를 제작할 수 있음.
-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2)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3) 배부금지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지하철역구내 포함)



● 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 안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② 주요선례



판단기준

-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 · 현판 · 현수막에 반드시 ‘예비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2006. 4. 13. 회답)
- 명함은 반드시 사각형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고, 접지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의 규격이 법정규격범위 이내이어야 함. (2008. 2. 25. 회답)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각 1명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배부장소에 예비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함.
  - ⇒ 예비후보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자가 특정 집회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는 연단에 앉아 있는 경우 그와 함께 다니는 자가 집회장소에서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음.
  -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에 부수되어 단순히 그 명함을 대신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학력표시방법 TIP

### 의 의

- 선거운동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250조에 따라 ‘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함.
- 따라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음.
  -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기재하여야 함.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함.
- 학력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대 상 : 예비후보자홍보물 · 예비후보자공약집 · 선거벽보 ·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 선거공약서 ·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학력
  -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 국내 정규학력 :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이수 학력 :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학력증명서

### 사 례

#### 1) 예비후보자의 명함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대학원 졸업’으로 게재하고 선거벽보 등에는 ‘○○대학교 졸업’으로 게재한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대학교’이하의 학력만을 게재 ⇒ **무방**
- ‘○○대학교 1년 중퇴’ 자가 ‘○○대학교 중퇴’라 게재 ⇒ **불가**  
(수학기간 미기재)

## 2) 예비후보자홍보물 · 예비후보자공약집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 인터넷 홈페이지

- 국내의 ‘◇◇고등학교’를 거쳐 외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
- 외국에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초·중·고를 이수하고 국내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대학교’, ‘○○대학원’을 모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시 외국에서 이수한 초 중 고학력증명서 모두와 ‘○○대학원’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대학교이하 학력은 게재할 수 있으나, ○○대학원 학력을 게재할 수 없음.**

## 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할 학력 중에서 2개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 4) 학력을 연설 등 말로 표현하는 경우

유사학력인 ‘◇◇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한 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토론회에서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녹화기를 통해 표출하는 경우에는 ‘게재’에 해당되어 금지됨)

⇒ 학력을 게재함이 없이 연설 등 말로 표현하는 경우 정규학력이 아니더라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 명함에 ‘예비후보자’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2006. 4. 13. 회답)  
⇒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당 후보자 △△△’로 표시 가능 (2008. 3. 11. 회답)
- 재질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2006. 4. 17. 회답)  
⇒ 다만, 스웨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는 없음.
- 당선무효로 시장 직을 상실한 자가 명함 등에 ‘전 ○○시장’, ‘민선2기 ○○시장 역임’이라고 게재하는 행위 (2006. 5. 12. 회답)
-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08. 1. 7. 회답)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명함 등에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08. 1. 15. 회답)

-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문화재 소개, 미아찾기 캠페인, 지하철노선도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평상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는 경우 통상의 명함으로 볼 수 없어 위반됨. (2006. 12. 22, 2007. 3. 19. 회답)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2007. 5. 18. 회답)
  - ↳ 다만, 명함수교시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위의 선임·신고된 자 외의 다른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음.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 백화점 등의 관리자 측에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법 제237조의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010. 3. 29. 회답)
-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일반사무실이나 학교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위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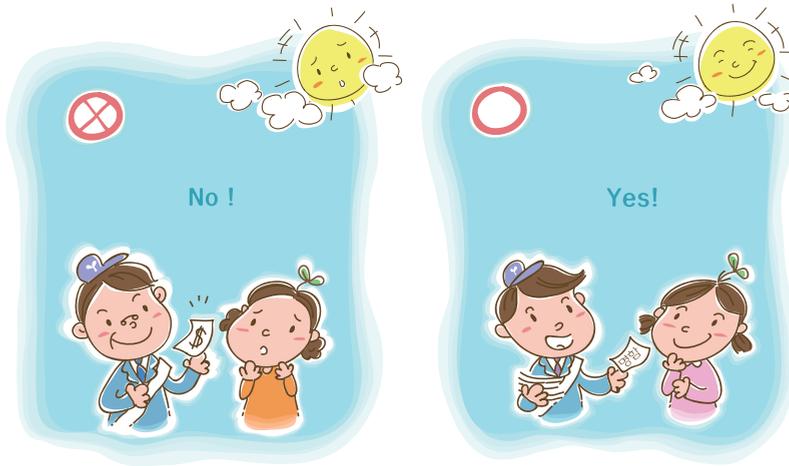


## 할 수 없는 사례

- 국제변호사란 명칭은 선거법상의 명칭도 아니고 그런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도 없음에도 이를 명함·선거공보 등에 게재하는 행위 (2006. 5. 3. 회답)
  - ↳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특별검사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예비후보자 명함에 특별검사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2008. 3. 13. 회답)
- 예비후보자의 최종학력이 대학원박사임에도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명함, 후보자 등록후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의 홍보물에 외국대학교 연구경력[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박사전(前) 과정이수('91~'92), 옥스퍼드대학교 박사후(後) 과정이수('93~'94)]을 게재하는 행위 (2012. 2. 22. 회답)
- 서로 다른 종류(2종 이상)의 명함을 동시에 1인에게 배부하는 행위 (2008. 2. 19. 회답)
  - ⇨ 시간을 달리하여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독립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는 행위 (대법원 2004. 8. 16.선고 2004더3062)
-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하철역구내 등 명함 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2006. 1. 26. 회답)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선고 2006고합189)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구내(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2010. 3. 25. 회답)
- 예비후보자가 대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포켓용 소형카세트로 음악이나 노래를 틀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010. 3. 25. 회답)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어촌계총회’, ‘○○마을동회’ 등에 참석하여 사회자의 축사 호명을 받고 단상 앞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2012. 1. 13. 회답)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 주변에서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012. 3. 9. 회답)
- 예비후보자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후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가능함.



## 4. 예비후보자홍보물 (법 §60의3)

### ① 법규요약

#### 1) 작성방법

- 종 수 : 1종
- 수 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 수 : 16면 이내
-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비당원은 '무소속')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유의사항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 우선순위 · 이행절차 · 이행기한 ·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2) 발송방법

-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12. 11. 24.)까지
- 횟 수 : 제한 없음.

⇒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 **방 법** : 규칙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시행령」에 따라 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일괄 제출할 수 있음.

### 3)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함.

## ② 주요선례



### 판단기준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름.
- 예비후보자홍보물이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세대주명단을 발송통수이내 범위안에서 이미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음. (2008. 2. 14. 회답)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규정된 규격과 면수 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또는 특정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2008. 2. 25. 회답)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2006. 1. 26.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소속 정당명으로 ‘○○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표시하는 행위 (2008. 3. 19.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에 소속정당의 심벌·정당명, 선거명·선거구명, 기호(기호를 알 수 있는 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우편법령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앞면에 기재하는 행위 (2008. 2. 5. 회답)  
 ⇨ 다만, 선거구호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뒷면에 기재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시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당 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06. 1. 10.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다른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신문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2012. 1. 5. 회답)
-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송이 불가능한 수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아 그 다른 세대주에게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2006. 4. 19. 회답)
- 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2007. 3. 12.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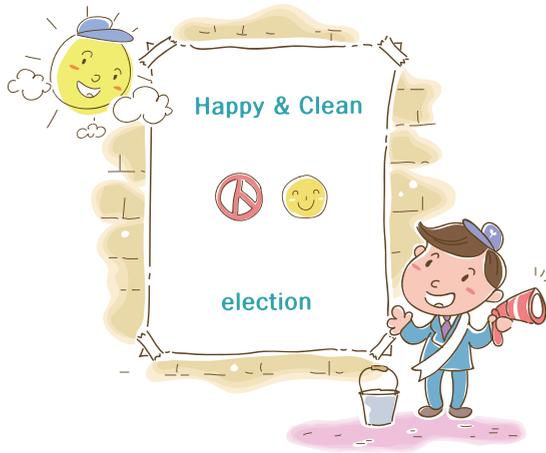
-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각각 작성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동일한 봉투에 동봉하여 발송하고 발송비용을 균등분담하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행위 (2007. 8. 28.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 안에서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 발송하는 행위 (2008. 2. 13.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에 수취인의 성명을 기재함이 없이 주소만을 적어 발송하는 행위 (2012. 3. 16.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 (2008. 3. 25.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게재하는 행위
  - ⇒ 언론기관이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출처(법에 따라 함께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밝혀 게재하는 경우에 한함.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봉투 뒷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공약사항이나 홍보내용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2008. 1. 30.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외에 한자를 배우게 할 용도로 천자문을 게재하는 행위 (2008. 1. 23.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하는 행위 (2012. 12. 29.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종이기가 아닌 PET 등의 재질로 작성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용 띠(신문이 배달될 때 쓰는 띠의 형태)를 사용하거나 책자를 봉투에 넣지 않고 책자 표지에 주소라벨을 부착하고 우체국 직인을 찍어서 발송하는 행위 (2008. 3. 7.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유력 정치인, 연예인 등의 지지 및 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길거리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 5. 예비후보자공약집 (법 §60의4)

### ① 법규요약

#### 1) 작성방법

- 종 수 : 1종
- 수 량 : 제한없음.
- 규 격 : 제한은 없으나, 도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면 수 : 제한없음.
- 게재사항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 우선순위 · 이행절차 · 이행기간 ·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함.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 · 성명 · 학력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다른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게재의무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비당원은 ‘무소속’)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2) 발간 · 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고처 : 중앙선관위
- 제출내용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② 주요선례

### ?! 판단기준

- 제작원가 이상의 통상적인 가격을 규칙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판매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것임. (2009. 3. 20. 회답)
- 후보자를 상징하거나 그 밖에 후보자의 홍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의 배경사진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게재한 면이나, 아무것도 게재하지 아니한 면은 법 제60조의4제2항에 따라 게재면수가 전체면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되는 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10. 1. 29. 회답)

- 법 제60조의4제1항 단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매방법이라 하더라도 금지하는 것임. (2009. 3. 20. 회답)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파일 게시)하는 행위 (2008. 7. 7. 회답)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구입하려 찾아온 1인에게 여러 권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하는 행위 (2009. 3. 20. 회답)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이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하는 행위 (2009. 3. 20. 회답)
- 예비후보자공약집의 구입을 신청한 자에게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행위 (2009. 3. 20.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 (2008. 7. 7. 회답)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제3자(다른 사람)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2008. 7. 7. 회답)
  - ⇒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유권자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2009. 3. 20. 회답)
- 1인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다량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2009. 3. 20. 회답)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2009. 3. 20. 회답)

## 6. 전 화 (법 §60의3)

### ① 법규요약



- 주 체 : 예비후보자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② 주요선례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2010. 3. 4. 회답)

⇒ 예비후보자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것은 위반됨.

-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방법인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2010. 4. 28. 회답)
- 예비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묻은 후 직접 통화를 하는 행위 (2010. 4. 23. 회답)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 7. 어깨띠 및 표지물 (법 §60의3)

### ① 법규요약



- 주 체 : 예비후보자
- 규 격
  -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 게재사항
  - 기호 ·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방 법 : 어깨띠 ·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② 주요선례



#### 할 수 있는 사례

- 어깨띠 제작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행위 (2006. 2. 13. 회답)  
⇒ 다만,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할 경우 위반됨.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센티미터, 20센티미터 이내)로 제작 · 사용하는 행위 (2006. 4. 26. 회답)

- 예비후보자가 표지물 규격 범위 내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아예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10. 2. 5. 회답)
-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휠체어 등 보조기구에 표지물을 설치하는 행위 (2010. 4. 23. 회답)
- 예비후보자가 수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996. 3. 21. 회답)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투표소 입구(외부)에서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된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2012. 3. 9. 회답)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콜라텍·7080라이브카페·나이트클럽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010. 3. 29. 회답)
  - ⇒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되는 것도 아님.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썬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 다만,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Free Hug(프리허그)'라는 문구가 표기된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구민들과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2006. 3. 22. 회답)
-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호소하는 행위  
⇒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가능함.



# Appendix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표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012. 4. 23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7. 22부터 10. 2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9. 20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0. 31부터 11. 9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9에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11. 21부터 11. 25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11. 25부터 11. 26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7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33③
11. 29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일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5까지	수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12. 6까지	목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10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2. 10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12. 12까지	수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12. 13부터 12. 14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2. 19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3. 2. 27까지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 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발 행 | 2012년 5월

발 행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과 (Tel. 02-780-2684~2685)

편집 · 인쇄 | 칼라터치 커뮤니케이션즈 (Tel. 02-2264-5461)

---

---

비매품



입후보예정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http://www.nec.go.kr)